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78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박충권 · 김상훈 · 김 건
김기웅 · 김성원 · 유상범
이인선 · 김기현 · 박수영
윤상현 · 유용원 의원
(1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병사 2명이 공개적으로 밝힌 “대한민국으로 자유귀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들의 생명·자유·인권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송환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기구(UNHCR, ICRC 등)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자유를 선택한 북한 출신 병사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2조와 제3조,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인 해당 포로 2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

2. 외교부와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외교문서를 발송하여,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고, 안전한 귀환 경로와 수용 절차를 신속히 협의할 것.

3. 대한민국 국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118조에 근거하여, 이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의 송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의회, UN 및 EU 인권기구 등과 직접 협의를 추진할 것.

5.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결의로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를 선택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2025년 1월 11일,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배치된 북한 인민군 소속 병사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되었다.

이들은 이후 공개된 언론 인터뷰와 현지 인권단체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명백히 밝혔다.

2025년 11월 9일, 한나 홉코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현직 국회의원 2인 및 국방부 소속 관계자 포함)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해당 북한군 포로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그들은 명백히 대한민국으로 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안에 협력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밝혔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정부에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 요청을 공식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 사안은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보호의무, 국제인권법이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책무와 직결된다.

특히, 해당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고문,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극심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바, 대한민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결의하여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연대를

요청해야 할 시점이다.

자유를 선택한 북한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분명히 응답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국가적 의무이자 책임이며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일이다.